##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5

발의연월일: 2021. 4. 16.

발 의 자:정운천·김선교·홍문표

안병길 · 최형두 · 권명호

김도읍・이양수・윤창현

구자근 • 이종성 • 권성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 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상속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는 사실 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

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의2 신설 등).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 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 는 자가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 한 경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하거나 조사하게"를 "조사하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로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소속 공무원에게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제1항 중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를 "토지가액에"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 농지 소유 처분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②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	,,
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	
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	
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
	배하고자 하는 다년생식물의
	<u>종류</u>
<u>&lt;신 설&gt;</u>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u>으려는 자의 연령·직업·영농</u>
	<u> 경력 및 거주지</u>
<u>&lt;신 설&gt;</u>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 ③ • ④ (생 략)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기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

- 1. ~ 6. (생략)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u>발급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u>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
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u>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u> 경우

8. (생략)

② (생략)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
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u>경우</u>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
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대·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u>검사하</u> <u>거나 조사하게</u>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 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조사하
<u>게</u>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된 농지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소속 공무원에
게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u>③</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조사
<u>.</u>
네56조의2(벌칙) 제6조에 따른 농

제56조의2(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7년

제57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 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u>개별공시지</u> 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 [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③ (생 략)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사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7조(벌칙) ①
	<u>토지가액에</u> -
	<u>.</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58조(벌칙)
·	
	· <u>&lt;삭 제&gt;</u>

#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